

## □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침서 변경내용 - 서론

구분	변경 전	변경내용
1. 보육시설 평가 인증의 도입	- 2010년 중앙정부 예산 2조원	- 2011년 중앙정부 예산 2조 5천억원
3.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	-	- 보육시설 재인증 실시 추가
4. 제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 (2005~2009) 평가	-	-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수치 업데이트
6. 2차 평가인증 시행 (2010) 결과	-	6. 2차 평가인증 시행(2010) 결과 추가 1) 2010년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2) 제2차 평가인증제도 개선 방안

※ 일반(공통) : 조사, 표현·문구 일부 수정

## □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변경내용 - 운영체계

구분	변경 전	변경내용
신청 대상	- 신규인증, 재참여	- 신규인증, 재인증, 재참여로 구분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홈페이지에 접속</li> <li>- 참여신청서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(선착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정 :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이 최종 완료</li> <li>- 수정 : 신규인증 신청의 경우 예약신청을 받은 후 기수별 참여 수에 따라 신청을 확정하며,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충 &lt;추가&gt;</li> <li>- 추가 : 재인증에 참여하는 인증시설에 대해 인증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 한다.(‘06~’09년 인증시설) 단,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시 인증이 종료되며, 재인증 과정 중 참여취소(포기)될 경우에도 인증이 종료 된다.(해당 월 말일 기준) ※ 단, 보육시설의 노후화에 의한 공사 및 리모델링, 소재지 변경, 정원 변경에 따른 운영형태 변경, 시설장·교사의 출산 발생 등으로 인해 제시된 평가인증 과정(자체점검 기간부터 평가기간까지)에 따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, 주어진 신청기간 기준 최대 6개월 이전</li> </ul>

구분	변경 전	변경내용													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터 재인증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</li> <li>신청방법 :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기수변경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FAX로 제출</li> </ul>																
입금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상계좌 부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접속 후 가상계좌 부여</li> </ul>																
환불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신청 마감일까지</th> <th>신청 마감 후~</th> <th>현장관찰자 파견 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환불</td> <td>100%</td> <td>50%</td> <td>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신청 마감일까지	신청 마감 후~	현장관찰자 파견 후	환불	100%	50%	0%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자체점검 시작일 전</th> <th>자체점검 시작일 후~현장관찰자 파견 이전</th> <th>현장관찰자 파견 이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환불</td> <td>100%</td> <td>50%</td> <td>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자체점검 시작일 전	자체점검 시작일 후~현장관찰자 파견 이전	현장관찰자 파견 이후	환불	100%	50%	0%
구분	신청 마감일까지	신청 마감 후~	현장관찰자 파견 후															
환불	100%	50%	0%															
구분	자체점검 시작일 전	자체점검 시작일 후~현장관찰자 파견 이전	현장관찰자 파견 이후															
환불	100%	50%	0%															
참여포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가 : 현장관찰자 파견 이전 자체포기는 현장 관찰 전일 오후 5시(17시)까지 보육시설이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.</li> </ul>																
평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내용 명확 : 관찰일에 현원(정원의 1/3 이상)이 충족되지 않아 평가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취소된다.</li> </ul>																
심의 (우수사례/부적절 사례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수사례 일부 내용 삭제 : 실내공기질 측정</li> <li>부적절사례 일부 내용 삭제 : 인가공간 용도 무단 전용</li> </ul>																
심의 (심의위원자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가인증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, 보육교사로서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: 교사 경력 1년 포함 총 경력 4년 이상인 자</li> <li>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: 교사 경력 1년 포함 총 경력 6년 이상인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정 :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, 보육교사로서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: 보육시설 경력(시설장, 보육교사) 총 4년 이상인 자</li> <li>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: 보육시설 경력(시설장, 보육교사) 총 6년 이상인 자</li> <li>※ 단, 당해연도에 참여시설로 선정되었거나 현장관찰자로 참여하는 경우 평가인증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
재참여 관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가 : 재인증 재참여의 경우, 재참여 기간동안 인증이 유효함</li> <li>추가 : 재인증 결과 인증유보인 시설 재참여 가능</li> <li>추가 : 재참여 시 지자체 기본사항 확인은 필수 항목에 한하여 이루어지며, 우수사례 및 부적절 사례는 일반참여 시설과 동일하게 확인한다.</li> </ul>																
참여취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가 : 보건복지부, 시·도, 시·군·구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</li> <li>추가 : 재인증 참여과정 중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</li> </ul>																
인증취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가 : 보건복지부, 시·도, 시·군·구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</li> <li>인증취소 처리 일자 : 인증취소일자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시점을 적용함(단, 2011. 1. 1일부터 적용하며, 2010. 12. 31까지 인증취소 사유 발생시설 중 2010. 12. 31까지 미처리된 보육시설은 인증취소일자를 2011. 1. 1로 일괄처리)</li> </ul>																

구분	변경 전	변경내용
확인방문		· 추가 : 확인방문자 2인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로 해당시설에 파견됨
인증유효기간		· 추가 : 재인증 재참여를 통해 인증이 결정된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인증결정 후 익월 1일부터 2년 8개월간 인증이 유효함
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		· 삭제 : 보육시설 평가인증 방문지원 · 추가 : 인증시설 ‘보육컨설팅’ 중앙 및 시도 보육정보센터에서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질적수준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, 체계적인 지원 및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며, 컨설팅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영유아보육법	·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	· 수정 : 제1항 삭제

※ 일반(공통) : 조사, 표현·문구 일부 수정

## □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(지표) 변경내용 - 40인 이상 보육시설

영역	항 목	변경내용
영역1 보육 환경	대 1-3. 육외놀이터와 놀이기구	· 보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놀이터 놀이기구 : 2010 보육사업안내 p.46 ‘놀이기구종류’와 동일하게 명시함
영역2 운영 관리	영역 2. 확인자료	· 대 2-8 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: 개별면담기록 추가함 · 대 2-9. 보육시설에서의 부모참여 :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’를 ‘부모 프로그램 실시 관련기록(가정통신문 등)’으로 변경함
	대 2-3.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	·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(별표 2)에 제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연령별 교사대 영유아 법정비율을 초과하여 보육하는 경우에 대한 허용범위를 ‘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’ 아래에 제시함
	대 2-5.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업무수행	· ‘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’ : 교사회의 월 1회 이하를 월 2회 미만으로 변경함
	대 2-8. 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	· 전화상담을 개별면담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함
영역3 보육 과정	대 3-7 보육과정 평가 및 영유아 활동 관찰	· 보육과정 평가 및 영유아 관찰의 정기적 기록 횟수 명시함(월 1회 이상)
	대 3-11 사회관계 증진 활동	· 영아(만 0-1세, 2세)의 사회관계 증진 활동의 구체적 예 보완함
	대 3-9. 10, 13, 14	· ‘미흡한 수준’ : 구체적 횟수 명시함

영역	항 목	변경내용
영역5 건강 과 영양	영역 5. 확인자료	· 대 5-10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: '건강검진결과서' 를 '건강검진 관련 서류' 와 '가정통신문' 으로 변경함
	대 5-2. 보육실의 환기, 채광, 조명, 온도관리	· 실내공기질 관련 2011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 반영함(연면적 430㎡ 이상의 국공립 및 860㎡이상의 법인, 직장, 민간 보육시설 ->연면적 430㎡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, 직장, 민간보육시설)
	대 5-8. 개별침구의 사용과 관리	· 여분의 침구 사용 시 관리방법 구체적으로 명시함 · '미흡한 수준' : 공동요를 사용하면서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 명시함
	대 5-9.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	· '미흡한 수준' : 사용(유효)기한이 명시 되지 않은 약품이 있는 경우 추가 명시함
	대 5-10.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	· 유아의 건강검진 항목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,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추가함 ·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해당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(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 참고)을 안내하도록 명시함 · 참고사항으로 '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 제4항 및 「별표 4」' 명시함
영역6 안전	대 6-5.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	· 영아(만 0-1세, 2세)에게 활동 자료로 제시된 직경 3.5 cm이하의 자연물(콩, 은행, 도토리 등)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
	대 6-9.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	· 보육시설 내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해야함을 별도 명시함 · '유도등 및 유도표지' 에서 유도표지 삭제함

※ 일반(공통) : 조사, 표현·문구 일부 수정

## □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(지표) 변경내용 - 39인 이하 보육시설

영역	항 목	변경내용
영역1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	영역 1. 확인자료	· 소 1-11. 보육시설에서의 부모참여 :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' 를 '부모 프로그램 실시 관련기록(가정통신문 등)' 으로 변경함
	소 1-2. 보육실의 공간 배치	· 소 1-2. 보육시설의 공간 배치->소 1-2. 보육실의 공간 배치 : 항목 기술 시 '보육시설' 을 '보육실' 로 변경하여 기술함
	소 1-3.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 공간	· 소 1-3. 보육시설내 영유아의 휴식 공간->소 1-3. 보육실내 영유아의 휴식 공간 : 항목기술 시 '보육시설' 을 '보육실' 로 변경하여 기술함
	소 1-6.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	·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(별표 2)에 제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연령별 교사대 영유아 법정비율을 초과하여 보육하는 경우에 대한 허용범위를 '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' 아래에 제시함
	소 1-10.	· 전화상담을 개별면담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함

영역	항 목	변경내용
	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	
영역2 보육 과정	영역 2. 영역 개요	· 활동자료 관련 내용을 추가함
	소 2-8 사회관계 증진 활동	· 영아(만 0-1세, 2세)의 사회관계 증진 활동의 구체적 예 보완함
	소 2-6. 7, 10, 11	· ‘미흡한 수준’ : 구체적 횟수 명시함
영역4 건강 과 영양	영역 4. 확인자료	· 소 4-10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: ‘건강검진결과서’ 를 ‘건강검진 관련 서류’ 와 ‘가정통신문’ 으로 변경함
	소 4-2. 보육실의 환기, 채광, 조명, 온도관리	· 실내공기질 관련 2011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 반영 함(연면적 430㎡ 이상의 국공립 및 860㎡이상의 법인, 직장, 민간 보육시설→연면적 430㎡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, 직장, 민간보육시설)
	소 4-8.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	· 여분의 침구 사용 시 관리방법 구체적으로 명시함 · ‘미흡한 수준’ : 공동요를 사용하면서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 명시함
	소 4-9.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	· ‘미흡한 수준’ : 사용(유효)기한이 명시 되지 않은 약품이 있는 경우 추가 명시함
	소 4-10.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	· 유아의 건강검진 항목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,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추가함 ·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해당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(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 참고)을 안내하도록 명시함 · 참고사항으로 ‘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 제4항 및 「별표 4」’ 명시함
영역5 안전	소 5-5.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	· 영아(만 0-1세, 2세)에게 활동 자료로 제시된 직경 3.5 cm이하의 자연물(콩, 은행, 도토리 등)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
	소 6-9.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	· 보육시설 내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해야함을 별도 명시함 · ‘유도등 및 유도표지’ 에서 유도표지 삭제함

※ 일반(공통) : 조사, 표현문구 일부 수정

## ▣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(지표) 변경내용 - 장애아전담 보육시설

영역	항 목	변경내용
영역1 보육 환경	장 1-3.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	· 보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놀이터 놀이기구 : 2010 보육사업안내 p.46 ‘놀이기구종류’ 와 동일하게 명시함
영역2 운영 관리	영역 2. 확인자료	· 장 2-10. 보육시설에서의 부모참여 :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’ 를 ‘부모 프로그램 실시 관련기록(가정통신문 등)’ 으로 변경함
	장 2-6. 시설장과 교사의 업무수행	· ‘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’ : 교사회의 월 1회 이하를 월 2회 미만으로 변경함

영역	항 목	변경내용
	장 2-9. 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	· 전화상담을 개별면담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함
영역5 건강 과 영양	영역 5. 확인자료	· 장 5-11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: '건강검진결과서' 를 '건강검진 관련 서류' 와 '가정통신문' 으로 변경함
	장 5-2. 보육실의 환기, 채광, 조명, 온도관리	· 실내공기질 관련 2011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 반영 함(연면적 430㎡ 이상의 국공립 및 860㎡이상의 법인, 직장, 민간 보육시설 ->연면적 430㎡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, 직장, 민간보육시설)
	장 5-8. 개별침구의 사용과 관리	· 여분의 침구 사용 시 관리방법 구체적으로 명시함 · '미흡한 수준' : 공동요를 사용하면서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 명시함
	장 5-9.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	· '미흡한 수준' : 사용(유효)기한이 명시 되지 않은 약품이 있는 경우 추가 명시함
	장 5-11.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	· 유아의 건강검진 항목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,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추가함 ·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해당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(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 참고)을 안내하도록 명시함 · 참고사항으로 '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 제4항 및 「별표 4」' 명시함
영역6 안전	장 6-5.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	· 영아(만 0-1세, 2세)에게 활동 자료로 제시된 직경 3.5 cm이하의 자연물(콩, 은행, 도토리 등)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
	장 6-9.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	· 보육시설 내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해 야함을 별도 명시함 · '유도등 및 유도표지' 에서 유도표지 삭제함

※ 일반(공통) : 조사, 표현·문구 일부 수정